



개인연금의 이해(1) : 3층 · 다층 구조의 노후소득보장체계

이상우 선임연구원

- 미국, 유럽 등의 주요 선진국들은 고령화 사회의 진전으로 인한 노후소득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오래전부터 3층 보장론(three pillar system)에 입각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 왔음.
- 3층 보장론은 사회보장 · 기업보장 · 자기보장의 3층에 의한 보장이론으로서 노후소득보장은 이들 3자간에 제도적으로 상호보완관계를 유지하여야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임.

〈그림 1〉 우리나라의 노후소득의 3층 보장 체계



- 1층의 사회보장은 사회연대원리에 입각한 헌법상의 국가의무와 생존권 보장에 근거를 두어 국민의 기초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· 기업 · 개인의 3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며,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이 여기에 해당됨.
- 2층의 기업보장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원리가 작용하고 있는데, 기업의 사회적 보장원칙과 종업원에 대한 임금후불설에 입각하여 국민의 표준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, 그 수단은 기업의 복지계획의 일환인 퇴직금, 기업연금 등이 주축을 이룸.

- 3층의 자기보장은 개인의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개인 스스로 노후보장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부담 원칙에 입각한 개인보장이며, 구체적인 보장수단으로는 저축과 개인연금 등이 있음.
 - 정부는 세제혜택 등을 통하여 개인의 자조노력을 지원함.
- World Bank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연금개혁의 방향을 권고하는 등 세계적인 연금개혁 흐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2005년에 발표한 보고서¹⁾에서 기존의 3층보장체계에서 보다 진화된 다층소득보장체계의 연금개혁 모형을 제안함.
 - World Bank는 기존의 획일적인 3층보장의 연금모형에서 탈피하여 각 국가의 사정에 맞게 노후소득의 다층체계(Multi-pillar system)²⁾ 연금모형을 제시하여 보다 유연한 연금개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입장으로 변경함.
 - 즉, 기존 3층 보장체계 모형에서 1층의 기초보장을 0층으로 설계하고, 확정급여형 공적연금 또는 명목확정기여형(NDC)³⁾ 등으로 변형된 공적연금의 존재를 인정하여 1층 제도에 편입하며, 기존 모형에서 강제가입 적립형 연금제도를 더욱 분화시켜 강제 그리고 임의 기업·개인연금 등으로 2~3층을 구분함.
 - 또한 0층에서 공적부조제도나 기초연금제도, 2층이나 3층에서 기업연금 또는 개인연금을 중첩시키는 등 각 층별로도 다양한 제도를 중첩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도록 설계함.

〈표 1〉 2005년 세계은행이 제시한 다층소득보장체계

층	특징	적용	재원
4층	가족 내의 비공식지원, 기타 개인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(주택소유)	임의	금융 및 비금융자산
3층	기업 또는 개인연금제도 (부분/완전적립식 DB 또는 적립식 DC)	임의	금융자산
2층	기업연금 또는 개인연금제도 (완전적립식 DB 또는 완전적립식 DC)	강제	금융자산
1층	공적연금, 공적으로 관리(DB 또는 NDC)	강제	보험료/ 일부적립금
0층	기초연금 또는 사회연금제도, 적어도 공적부조제도(보편적 또는 자산조사)	보편적/ 잔여적	정부예산/ 일반재정

1) World Bank, Old Age Income Support in the 21st Century, 2005.
 2) 'Multi-pillar system'을 다층체계 또는 다주체계로 혼용하여 사용하지만 편의상 다층체계로 표현함.
 3) NDC(Notional Defined Contribution)는 개인별 급여액을 가입자의 소득, 예상 수명, 납입 기간의 경제 성장률 등에 따라 조정하는 방식.